

불법체류 외국인

자진출국 제도



- 2020. 6. 30.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, 입국금지 면제, 재입국 기회 부여
- 2020. 2. 1. 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은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
- 2020. 3. 1. 이후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
- 2020. 4. 1.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
- 2020. 7. 1. 이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

불법체류 외국인(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(2019. 12. 11.)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
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6. 30.,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(온라인 사전신고)
- **제출서류**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
- **자진출국확인서 수령** : 출국 당일 '자진출국확인서' 수령(공항만 출입국관서) 후 출국
- **비자신청** : 일정기간(3~6개월) 경과 후 ①자진출국확인서 ②본국범죄경력증명서 ③결핵검진확인서(진단서)를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,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비자 신청
 - ➔ 단기방문(C-3, 90일, 단수) 자격으로 재입국, 체류지 신고 및 위법사실 없이 출국한 경우 단기방문(C-3, 90일, 12개월, 복수) 비자 발급 가능(C-3 단수비자 발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서만 허용)
 - ※ 2020. 7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30% 부과, 2020. 10. 1. 이후 자진출국 신고시 원 범칙금액의 50% 부과
 - ※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(감염병 치료 사실 입증 필요)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신고 시점으로 간주
 - ※ C-3(단수)로 입국한 날부터 14일(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은 제외) 이내에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체류지 신고. 단 14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 신고(C-3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신고)
 - ※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허가(E-9), 유학(D-2), 연수(D-4), 투자(D-8) 등 비자발급 가능

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

**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
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**

-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

※ 위변조여권 행사자, 신원불일치자, 밀입국자,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,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함

자진출국 신고하려는 외국인

온라인 사전신고 (hikorea.go.kr)

- 출국일 기준 3일 ~ 15일 전 신고,
- 온라인(hikorea.go.kr)으로 인적사항, 체류지 주소, 출국예정일, 출국공항, 출국편명 기재

온라인 사전신고자

-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
- 자진출국신고서, 여권, 항공권 제출
- 사범심사 후 자진출국확인서 수령

체류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사전신고/사범심사

- 출국일 기준 3일(공휴일 제외) ~ 15일(공휴일 포함) 전 신고
- 자진출국신고서, 여권, 항공권 제출
- ※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

체류지 사무소 방문 사전신고자

-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사무소 방문
- 자진출국확인서 수령

공항만 출입국 · 외국인관서

출국



법무부

Ministry of Justice